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건설 대기업 간 상생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 “건설단체”라 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화 건설부문, 태영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HJ중공업(이하 “건설 대기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제주자치도, 건설단체 및 건설 대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건설 대기업과 제주 건설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원칙) 제주자치도, 건설단체, 건설 대기업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협약 당사자는 제주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건설 대기업과 제주 건설업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2. 제주자치도는 제주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 및 건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건설 대기업이 제주지역 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건설단체는 제주 건설업체의 도외·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시장 개척비 지원 및 컨설팅 실시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 건설 대기업은 제주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도외·해외 건설시장 동반 진출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1월 8일



도지사 오영훈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회장 박선호

박선호



회장 김기춘

김기춘

제주특별자치도회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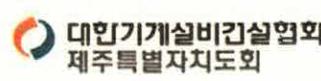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백상훈

백상훈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현동수

현동수



대표이사 윤영준

윤영준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외주실장

마근혁



대표이사 백정완

백정완



대표이사 마창민

마창민



대표이사 한성희

한성희

제주특별자치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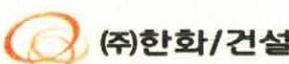
대구개계역시장

이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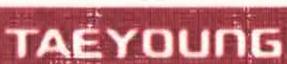
대표이사 변부섭

변부섭



대표이사 김승모

김승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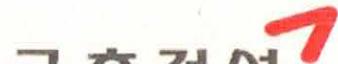
대표이사 이재규

이재규

제주특별자치도회

대구개계역시장

이인종



대표이사 서재환

서재환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표이사 윤진오

윤진오



대표이사 홍문기

홍문기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홍문기